

## 근세 중국의 ‘割股’ 행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변화에 대하여

한 예 원\*

### < 目 次 >

I. 들어가며	IV. 南宋에서 明에 이르는 朱子學者들의 割股觀
II. 唐代의 割股	V. 明清의 割股에 대한 정책적 혼란
III. 北宋의 割股	VI. 나오며

### <국문 초록>

‘割股’는 자식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베어서 부모의 병구완을 하는 행위이다. 부모의 병환이 위독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처방이 없을 때, 효심어린 인간이 상상한 것은 극단적으로 ‘人肉’을 베어 탕으로 만들어 드시게 하는 것이었다. 효도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人肉’의 공양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행위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부모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할고’의 행위는 唐代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처음에는 불치병에 대한 의약적 권장이었던 듯하다. 부모의 병이 회복되지 않아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인육’을 드리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식 된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할고 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旌表를 하사하여 권장하자, 정표를 받기 위한 할고도 행하여질 정도였다.

\* 조선대학교 교수 / [yaewonh@chosun.ac.kr](mailto:yaewonh@chosun.ac.kr)

중국에서는 割股 외에도 극단적 행위로 ‘割肝’도 있다. 肝을 베어내는 것은 허벅지 살을 베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생명유지에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 행위는 송대의 주자학자들에게는 권장할 수 불합리의 극치였을 것이다. 송대에는 유학적 가치관이 보편화 되면서 『孝經』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란 신체관에 입각하여 ‘人肉’의 처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더욱이 ‘修己治人’을 모토로 삼고 있는 정치관에서 남에게 효심을 보여주기 위한 ‘爲人’의 割股는 표창 받을 수 없는 행위로 견제되었다. 따라서 유학적 신체관이 보편화된 송대에서는 할고 금지와 함께 旌表를 금지하는 ‘禁令’이 발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과 士人層에서는 남송에서 元代로 접어들면서도 할고는 여전히 유행하였고, 심지어 왕족에게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후 明代와 清代에서는 할고에 대하여 정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禁令의 발포 되었다가 다시 해제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엇치락뒤치락 하는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만주족의 淸朝는 초기에는 禁令을 지키다가, 중기에는 旌表를 교화와 계도의 방법으로 적극 사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황제의 통치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인육’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인육을 제물로 바치는 상징이 기록에 남아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인의 할고에 내포된 종교적 의미가 근세의 유교적 신체관을 거치면서 할고를 금지하는 禁令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모 자식의 개인적 天倫보다, 가족 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人倫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효도, 割股, 人肉, 旌表, 신체관

## I. 들어가며

‘割股’란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살점을 잘라내 조리하여 부모에게 약으로 드렸던 효성 행위를 말한다.<sup>1)</sup> 중국의 근세

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割股孝子'라는 말이 사용될 만큼 미화되고 장려되었는데,<sup>2)</sup> 특히 대표적 효도 관련 자료인 『二十四孝』나 『孝行錄』, 그리고 唐代 이후의 역사기록에 자주 보이는 紀事가 되었다.<sup>3)</sup> 예를 들면, 唐代의 王武子가 집을 비우고 타지에 가있을 때 시어머니가 위독하였다. 효심 지극한 그의 아내는 默禱한 뒤 割股하여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병이 곧바로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효행록』에 전하고 있다.<sup>4)</sup>

이렇게 唐代부터 보이는 割股의 전통은 근대에 까지도 남아있었던 듯하다. 근대의 대표적 작가인 魯迅(1881~1936)은 『狂人日記』에서 "내가 너덧 살 되던 무렵,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는데, 형이 내게 말할걸 부모가 병에 걸리면 자식은 자기 살을 한 점 베어내어 삶아서 부모님께 드려야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하시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그의 아내인 周海嬰(1929~2011)은 자신의 어머니인 許廣平(1898~1968)과의 경험담을 남기고 있다. "내가 겨우 자라서 상황 판단을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우연히 어머니의 왼쪽 팔뚝의 안쪽이 폭 파여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것은 살점을 베어낸 상처인 듯하였다. 나는 당시 그 상처 자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옛날 상처라고만 대답하셨다. 뒤에 열대 열 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그 상처에 대해 여쭙 보았다. 그 때는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해주셨다. 이전에 어리고 순수하였을 때, 아버지가 중병에

1) 잘라내는 신체부위는 대개 허벅지(腿), 팔뚝(臂), 간(肝) 등이기 때문에 '규고(割股)' '척고(剔股)' '할간(割肝)' '척간(剔肝)' '할굉(割肱)'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할고'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편의상 '할고'를 사용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참조.)

2)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윤호진, 『孝行錄』과 孝行說話, 『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2002년, 참조.

3) 『孝行錄』(庚子本)奎章閣所藏. 『孝行錄』(己巳本), 奎章閣所藏. 『新編二十四孝』, 光明日報出版社, 北京, 1995. 『二十四孝』, 中國書店 出版 北京, 1999.

4) 권보, 『孝行錄』, 경인문화사, 2004.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二十四孝』라는 책속에서 읽은 ‘割股療親’ 즉 부모님이 걸려주신 것에 대해 보은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책에서 본대로 불에 살을 그슬려서 팔뚝 안쪽의 살점을 잘라내어 湯藥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다.”<sup>5)</sup>고.

이렇듯 중국에서는 부모나 시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약재로 사용하는 효자 효녀의 이야기는 唐宋 이래 正史든 野乘이든 수없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당나라의 韓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찍부터 비판적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민간 사회든 관이든 割股를 최상의 효도라고 장려 하였다. 즉 당시 국가와 사대부들은 본질적으로 ‘할고’를 공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6)</sup>

중국의 割股來는 正史와 『古今圖書集成』에 보이는 割股의 용례를 이용하여, 唐 이후 割股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써 활발하게 행해지다가, 宋 以後에는 더욱이 도덕성까지 가중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明清 시기에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말한다.<sup>7)</sup> 또한 邱仲麟은 『古今圖書集成』과 『地方志』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割股의 방법을 정리하였다. 唐宋 시기에는 평민계층에서 주로 할고가 행해졌지만, 明清 시기에 이르면 科擧를 응시하는 士人層이나 유학자들에게 까지 확산되었다고 한다.<sup>8)</sup> 하지만 唐에서 北宋에 이르는 전환의 시기(618~1127)에는 전통적 신체관에 입각하여 割股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리고 南宋 시대가 되면 割股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할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유교의 전통적 신체 훼손을 경계하는 사유를 넘어서는 행위관념이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5) 周海嬰, 『魯迅與我七十年』, 南海出版公司, 2001, P.355.

6) 桑原隲藏, 『中國의 孝道』, 講談社, 1977, PP.121-122.

7) 龔麟來, 『中國古代的食人 - 人食人行爲透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8) 邱仲麟, 「不孝之孝 - 唐以來割股療親現象의 社會史初探」, 『新史學』6卷1期, 1995. 邱仲麟, 「人藥與血氣 - “割股”療親現象의 醫療觀念」, 『新史學』10卷4期, 1999.

“우리 몸은 털 하나라도 부모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함부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라는 『효경』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개념장치가 전면에 부각되었던 것이다.<sup>9)</sup> 여기서 전면에 내세워진 것이 바로 '민중교화'의 슬로건이었다. 즉 민중에게 내면으로부터의 자각을 촉구하던 유교적 教化에 의지하여, 割股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割股를 부모에 대한 진심어린 효행의 대표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도학(유학)의 민중교화를 거론한 연구로는 吳佩林鐘莉<sup>10)</sup>, 潘榮華楊芳<sup>11)</sup>, 前川亨<sup>12)</sup> 등의 연구가 있다.<sup>13)</sup>

신체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보루이다. 따라서 인육을 부모에게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려는 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인의 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변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을 유교적 효도 관념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맥락에 따라 唐代, 北宋, 明代, 清代로 나누어 割股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할고'는 다양한 역사적 기술, 서사적 자료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효도행위'로만 이해할 뿐, 전통사회의 정치적 교화 및 종교적 상징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본고의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할고'

9) 현재 중국에서 출판된 『효경』 관련 참고도서로는 皮錫瑞撰/吳仰相點校的 『孝經鄭注疏』(中華書局, 2016)과 羅螢黃黎星의 『孝經開講』(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그리고 汪受寬의 『孝經譯注』(上海古籍出版社, 2016), 姚中秋의 『孝經大義』(中國文聯出版社, 2017), 陳壁生の 『孝經學史』(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5)가 참조된다.

10) 吳佩林鐘莉, 「傳統中國割股療養親語境中的觀念與信仰」, 『史學理論研究』 제4기, 2013.

11) 潘榮華楊芳, 「論宋代旌表政策對民間割股陋俗的影向」,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13卷3期, 2012.

12) 前川亨, 「身體感覺としての孝」, 『東アジア社會における儒教の變容』, 專修大學出版局, 2007.

13) 반면에 金文京은 唐宋 이래 효도의 대표적 행위로 평가되던 割股의 풍습이 元代에 道學의 보급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金文京, 『孝行錄』と「二十四孝」再論, 『藝文研究』, 65号, 1994.)

라는 행위가 사회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Ⅱ. 唐代의 割股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역사상 인육을 식용하는 경우의 보편적 동기를 桑原隲藏은 대략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 부족한 飢饉의 시기에, 두 번째는 전쟁으로 城이 포위당하여 식량이 떨어졌을 때, 세 번째는 일종의 기호품으로, 네 번째는 매우 증오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째는 의료목적이라고 설명한다.<sup>14)</sup> 그런데 효도행위로써의 割股는 다섯 번째 의료 목적으로 인육을 식용한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료목적으로서의 割股를 가장 먼저 醫藥書에 소개한 인물은 陳藏器(687?~757?)이다.

당나라 때 陳藏器는 자신의 저술인 『本草拾遺』에서 人肉으로 허약체질(羸疾)을 고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민간에서는 부모의 병구완을 위하여 허벅지 살을 베어서 권하는 풍습이 생겼다.<sup>15)</sup>

陳藏器의 『본초습유』에 '할고료친'의 의료적 가치가 처음 기록되었고, 그 이후 민간에 할고행위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헌상에는 唐 이전에도 할고의 풍습이 있었던 듯하다. 『古今圖書集成』에는 後漢의 李妙寧,<sup>16)</sup> 晉의 杜世壽의<sup>17)</sup> 기사가 보이고, 또 『江南通志』에는 隋의 陳果仁<sup>18)</sup>의

14) 桑原隲藏, 「支那人の食人肉風習」, 『桑原隲藏 全集』第1卷, 岩波書店, 1968.

15) 『新唐書』, 卷195, 「孝友傳」, “唐時陳藏器著本草拾遺, 謂人肉治羸疾, 自是民間以父母疾, 多割股肉而進.”

16) 『古今圖書集成』, 閩媛典, 閩孝部, 列傳1.

기사가 실려 있다. 李妙寧과 杜世壽의 할고 행위는 액면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만, 陳果仁의 할고행위는 『全唐文』에도 보이므로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때마침 재해를 막고 복을 비는 행사를 위해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어머니께 드릴 고기 반찬을 준비할 수 없어서 스스로 허벅지 살을 베어서 국을 끓이고, 자신의 피로 『법화경』을 筆寫하여 어머니 병환의 쾌차를 빌었다.<sup>19)</sup>

여기 陳果仁(549~620)이란 인물은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陳果仁'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헌에 남아있다. 이러한 陳果仁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隋나라 부터 唐나라 初期까지는 병구완을 위해서는 반드시 人肉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고기도 환자의 식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민의 신분인 아닌 관리 신분에서도 '割股療親'을 행한 기록이 남아있다. 王友貞의 아버지는 唐代 則天武后의 시기 麟台少監을 지냈고, 아들 王友貞도 관에 근무한 관료집안이었다.

우정이 弱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였다. 의사는 우정에게 "오직 人肉을 드시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정은 자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허벅지 살을 베어서 드시게 하자, 어머니의 병환이 곧 차도를 보였다. 측천무후가 이것을 듣고는 사람을 우정의 집에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한 뒤, 특별하게 旌表를 하사하여 칭찬하였다.<sup>20)</sup>

17) 『古今圖書集成』, 學行典, 孝弟部, 名賢列傳3.

18) 『江南通志』, 권200.

19) 『全唐文』, 권915, 德宣「隋司徒陳公舍宅造寺碑」: "公事後親, 親病須肉, 時屬琴屠, 肉不可致. 公乃割股以充羹, 刺血寫法華經, 爲先妣修福."

20) 『舊唐書』, 권192, 「王友貞傳」, "友貞弱冠時, 母病篤, 醫言唯啖人肉乃差. 友貞獨念無可求治, 乃割股肉以飴親, 母病尋差. 則天聞之, 令就其家驗問, 特加旌表."

왕우정의 ‘割股療母’의 행위에 대하여 則天武后(624~705)가 旌表를 내려 칭찬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본받으라는 권장의 의미이다. 이후 이러한 旌表의 하사는 정치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儒家에서 효도는 올바른 삶을 사는 가장 기본 덕목으로 권장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효도는 종교적인 측면의 내재적 효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살아 있는 부모에게는 ‘割股療親’의 효도를 행하고, 죽은 조상에게 追遠의 의념을 나타내는 제사를 올리는 것은,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則天武后의 旌表는 이러한 내재적이며 자발적인 효도를 정치적이며 외재적 효도로 변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효심보다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旌表를 받기 위해 割股라는 행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隋末唐初 시기에 행해진 割股는 의료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武功으로 이름을 알린 李勣(594?~669)은 武德3년(620) 친구였던 單雄信과 전쟁터에서 적장으로 만나 맞싸우다가 그를 포로로 잡게 되었다. 그는 高祖 李淵에게 친구의 목숨만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구는 사형에 처해졌다.

장차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자, 李勣은 소리 내어 울며 비통해 하면서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것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길, “삶과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지만, 내 삶과 함께 흠으로 돌아가시오.”하였다.<sup>21)</sup>

李勣은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친구의 비운에 슬피하면서 죽어가는 친구의 혼을 달래기 위하여 割股를 행하였던 것이다. 이는 ‘할고료친’의 목적이 아닌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정표이고, 몸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신체관의 표현이었다.

또 제사에 제물로 쓰기 위하여 割股를 하였던 용례도 있다. 烏重胤

21) 『舊唐書』, 권67, 「李勣傳」, “臨將就戮, 勣對之號慟, 割股肉以啖之, 曰, 生死永訣, 此肉同歸於土”矣.”



(761~827)이 죽은 날, 그의 부하들은 단체로 割股를 감행하고, 人肉을 제 사상에 올렸다고 한다.

숨이 끊어진 날, 軍士 이십여 명이 모두 허벅지 살을 베어서 제사를 올렸다. 비록 옛날의 유명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이 이상의 영예는 없었을 것이다.<sup>22)</sup>

唐代의 祭祀를 위하여 割股하는 이러한 예는, 이후 宋代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유교적 신체관이 저변에 확산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唐代에 보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할고의식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의거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信者들이 초월자인 神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올리는 종교 의례와 맥이 통하는 종교적 상징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Ⅲ. 北宋의 割股

後梁의 태조 朱溫은 開元 元年(907) 군인이나 서민 중에는 할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일 손가락을 자르거나 할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소로 올리지 말라”<sup>23)</sup>고 하명하였다. 이것은 서민 중에 徭役을 피하기 위하여 할고를 행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또 後唐 때에도 程遜이 天城 4년(929)에 割股禁止를 주창하는 상소문을 올렸다.<sup>24)</sup> 그렇지만 宋代에는 이러한 禁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묘지명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割股를 칭송하고 있다. 宋代 초기의 葉參(964~1043)은 咸平4년(1001)에 진사가 되어 主簿·通判·知州의 벼슬을 역임한 뒤 光祿卿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宋祚(998~1061)는 그의 묘지명 속

22) 『舊唐書』, 권161, 「烏重胤傳」, “身歿之日, 軍士二十餘人, 皆割股肉以爲祭醑, 雖古之名將, 無以加焉.”

23) 『舊五代史』 권3, 梁書3, 太祖紀.

24) 『冊府元龜』 권475, 台省部, 奏議6. 참조.

에서 다음처럼 割股를 찬미하고 있다.

故人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羊부인을 섬기는데 매우 효성스러웠다. 다른 때에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故人은 당황하여 서둘러 허벅지 살을 베어서 국을 끓여 드리자, 어머니가 그것을 드시고 병이 나았다.<sup>25)</sup>

宋代가 되면 이미 士人層의 할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용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胡宿(995~1067), 張方平(1042~1102), 李覲(1009~1059), 范祖禹(1041~1098), 陸佃(1042~1102) 등이 쓴 묘지명 속에 科擧 及第者들의 할고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송의 중기가 되면 士人層뿐 만이 아니라, 皇族 중에서도 할고하는 용례가 보여진다. 宋太祖 趙匡胤의 넷째 아들 趙德芳(秦王)의 자손 중에 趙令攀(조광운의 6대 손자<sup>26)</sup>)의 할고 기사가 范祖禹(1041~1098)가 쓴 묘지명에 보인다.

어머니 和義 郡夫人의 병이 위독하자 의사는 곤란한 얼굴색을 지었다. 공이 허벅지 살을 베어서 국을 끓여 드렸다. 어머니의 병이 점차로 좋아졌다.<sup>27)</sup>

황족의 할고의 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 范祖禹가 쓴 「保州防禦使贈崇信君節度使房國公墓誌銘」(『范太史集』 권45)과 「右監門率府率妻劉氏墓誌銘」(『范太史集』 권47)가 있고, 또 송대의 문인이었던 慕容彥逢(1067~1117)이 쓴 「宗室故金吾衛大將軍淄州防禦使贈安化軍節度觀察留後追封高密郡公墓誌銘」(『摛文堂集』 권14)이 있다. 이러한 묘지명의 기록에만 의지해서 실제로 割股가 행하여졌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에 割股라는 행위가 讚辭로 거론되었던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25) 『冊府元龜』 권59, 「故光祿卿葉府君墓誌銘」, “君少孤, 事母羊夫人至孝. 異時疾革, 君惶遽割股肉爲羹奉, 夫人食之而愈.”

26) 『宋史』 권222, 「宗室世系表」.

27) 范祖禹, 『范太史集』 권51, 「右監門衛大將軍贈淄州防禦使追封廣平侯墓誌銘」, “母和義郡夫人疾篤, 醫有難色, 公割股爲羹以進, 母疾隨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割股가 효도의 상징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추천되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南宋에서 明에 이르는 朱子學者들의 할고관

주자학이 체계화되던 南宋의 시기가 되면 道學者들 중에서는 割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려고 하였다. 북송시대의 도학자인 程顥·程頤도 할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남송시대 대표적 도학자 朱熹에게도 이어졌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세상일을 보여주고, 자신의 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게하면 비록 군대(甲兵), 생업(錢穀), 제사(籩豆), 아전(有司)의 일이라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면, 비록 허벅지 살베기(割股), 시묘살이(廬墓), 旻嬰과 같은 검소한 생활(敝車羸馬)을 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또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다.<sup>28)</sup>

朱熹는 割股라는 행위가 아무리 私的인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爲人'의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할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행하고 있는 割股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순수한 효심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효자로 평가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일단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朱熹는 割股란 中庸에서 벗어난 행위로 권장할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孝를 가지고 말한다면, 효란 明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28) 朱熹 『大學或問』, “大抵以學者而視天下之事以爲己事之所當然而爲之, 則雖甲兵錢穀籩豆有司之事, 皆爲己也. 以其可以求知於世而爲之, 則雖割股廬墓敝車羸馬, 亦爲人.”

한 자체적으로 당연한 규칙이 있어야만 한다. 그 규칙에 미치지 못한다면 물론 옳지 못한 일이지만, 만약 규칙보다 과하게 적용하면 반드시 허벅지를 베는 割股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만다.<sup>29)</sup>

朱熹는 할고란 효도의 도리를 벗어난 지나친 행위라는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가족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덕목인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덕행이라도 중용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근본을 뒤흔드는 과행이 되고 만다. 주희는 남에게 효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할고는 지극한 효도의 상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가족관계, 나아가 향촌관계, 사회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 묻기를 “割股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하였다. 만일 이 割股를 진실 된 마음으로 행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효도에 가깝다고 할만하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 할고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기대한다.<sup>30)</sup>

공자의 유명한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의 구별 논리를 적용하여, 朱熹는 효도를 ‘爲己’와 ‘爲人’으로 구별하고 있다. 효도이든 학문이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간심리를 직시하면서 경고하고 있다. 즉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의 병구완을 위한 割股라면, 권장은 못하지만 크게 거론할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효도라는 禮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서 타자에게 좋은 평가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주희가 『小學』 등의 몽학 교육서에 할고의 예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만을 보더

29) 朱熹, 『朱子語類』 권14, 115조, “且以孝言之, 孝是明德, 然亦自有堂堂之則, 不及則固不是, 若是過其則, 必有割股之事.”

30) 朱熹, 『朱子語類』 권17, 48조, “又問割股一事如何, 曰, 割股固自不是. 若是誠心爲之, 不求人知, 亦庶幾. 今有以此要譽者.”

라도, 할고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朱熹와 같은 시대의 도학자인 呂祖謙·張栻·陸九淵 등에게서도 할고를 찬미하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陳德秀(1178~1235)의 경우, 선행연구에 서는 그가 할고를 긍정하고, 더욱이 민중교화의 측면에서 권장하였다고 기술 되어왔다. 특히 그의 「泉州勸孝文」은 할고를 긍정하는 대표적 문서로 거론 되는 경우가 많았다. 「泉州勸孝文」의 내용은 우선 제일 먼저 불효자와 割股를 행할 정도의 효자를 대비하면서 효도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진정한 효자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孝經』의 효자 모습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효자가 부모를 섬길 때, 평상시에는 자식으로서 공경함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고, 병구완을 할 때는 근심함을 다한다.”<sup>31)</sup> 그것을 이어서 효자가 병구완하는 구체적 방법을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이른바 ‘병구완 할 때 자식으로서 근심함을 다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병에 걸리면 자식은 지극히 근심하고 걱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옛사람은 어머니가 병환이시면 3년 동안 밤에 옷도 벗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님의 나이가 이미 노령이므로 병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된 사람은 마땅히 몸소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만 한다. 약을 쓸 때는 반드시 먼저 맛보고, 만일 명의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탁하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 반드시 간장을 도려내는 일(剔肝)이나 허벅지를 베어내는 일(割股)등을 해야만, 그런 다음 효도라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sup>32)</sup>

진독수는 위의 문장에서 지극한 효도란 우선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짐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의사를 구하여 병구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剔肝’이나 ‘割股’를

31) 『孝經』, 「紀孝行章第十」,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32) 『西山文集』 권40, 「泉州勸孝文」, “所謂病則致其憂者, 言父母有疾, 當極其憂慮也. 昔人有母病, 三年夜不解帶者, 親年既高, 不能無疾, 人子當躬自侍奉. 藥必先賞, 若有名醫, 不惜涕泣懇告以求治療之法. 不必剔肝割股, 然後爲孝.”

해야 효도라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절장취의해서 말미의 문장을 인용하여 진독수를 할고의 권장자라고 자리매김 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南宋의 朱熹 이후, 割股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교훈으로 삼아 권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유학자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할고와 같이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가 요구하는 몸짓으로서의 '禮'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南宋 이후의 신체관은 명대에 이르르면 더욱 선명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黃仲昭(1435~1508)는 割股와 같은 극단적 행위는 모두 중용에서 벗어나므로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論에서 말하길, 陳亨運의 廬墓살이, 傅孝明의 간을 도려냄(割肝), 郭齊의 허벅지살을 베어냄(割股)은 모두 성현의 중용의 도에 벗어나므로, 교훈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다.<sup>33)</sup>

여기서 '割股'는 割股와 같은 의미이다. '割肝'은 割股보다도 한층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하는 사회는 건전하고 건전한 질서의식이 사라진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禮學을 배우고 실천하는 건전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면 결코 권장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明代의 朱澗(1486~1552)는 할고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효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할고의 행위는 자식 된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정상적인 常道가 아니므로 교훈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sup>34)</sup>

33) 黃仲昭, 『未軒文集補遺』 卷下, 「陳亨運傅孝明郭齊列傳論」, “論曰, 陳亨運廬墓, 傅孝明割肝, 郭齊割股, 皆非聖賢中道, 不可以爲訓.”

34) 朱澗, 『天馬山房遺稿』 卷2, 「題勸孝手卷序」, “割股之事 非人子事親之常, 不可以爲訓.”

그렇다고 할고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효도의 실천으로 권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고는 부모 섬기는 '常道'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常道'를 따르게 하는 것이 유교적 통치사회의 통치술이다. '常道'가 아니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邪道'라는 말도 된다. 朱熹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효도라고 비판하였던 견해에 이어지는 관점이다.

더욱이 李時珍(1518~1593)은 『本草綱目』을 편찬하면서, 할고의 의료적 약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할고하여 얻게 되는 人肉은 더 이상 효심 가득한 효자가 부모의 불치병을 낫게 하는 특효약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 割股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唐代的 陳藏器 이후, 의약계에서 人肉을 불치병에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건데 陳氏(陳藏器) 이전에도 이미 割股·割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허물을 진씨에게 돌리는 이유는, 그가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의혹을 없애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에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草』는 가볍게 말해서는 안된다. 아 몸(身體)과 머리털(髮)과 피부(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부모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여도 어찌 자손이 그 신체를 손상시켜서 스스로 그것을 부모에게 먹게 하겠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백성의 견식일 따름이다.<sup>35)</sup>

李時珍은 의약계에서 人肉을 불치병의 特效藥으로 권장하였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다. 대신 그는 확고하게 유학적 효도관, 신체관을 강조한다. 『대학』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의 가르침을 자손 된 사람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기본덕목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유학적 신체관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할고를 권장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그룹은 의사집단이다. 송대의 李觀은 人肉을 권장하는 의사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35) 朱熹, 『天馬山房遺稿』卷52, 人部, 人肉, “案陳氏之先, 已有割股割肝者矣, 而歸咎陳氏, 所以罪其筆之於書而不立言以跋惑也. 本草可輕言哉. 嗚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父母雖病篤, 豈肯欲子孫殘像其支體而自食其骨肉乎. 此愚民之見也.”

형이 일찍이 병으로 괴로워하자 의사는 人肉을 먹어야 한다고 권장하여서 그는 허벅지 살을 베었다.<sup>36)</sup>

이 기록을 통하여 환자의 고통이 심해져서 일반적인 약으로 효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인육을 권장하였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육을 권하는 의사들은 元代에도 보인다. 胡炳文도 李觀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 의사가 말하길, “人肉을 먹으면 곧바로 차도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였다.<sup>37)</sup>

明代의 유명한 유학자인 方孝孺(1357~1402)도 비슷한 말을 남기고 있다.

어머니가 예전에 아프셨을 때, 의사가 人肉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38)</sup>

이렇게 의사 집단들이 人肉을 약으로 쓸 것을 권장하는 처방에 대하여 유학자들은 점차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모의 병구완도 중요하지만, ‘身體髮膚’를 훼손하지 않는 신체관에 입각하여 이성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清代에 정리되는 『明史』의 列女傳에는 의료행위를 하였던 도교의 方士가 인육을 권장하였던 것이 실려 있기도 하다.

어떤 方士가 그의 집에 이르러서 말하길, 사람의 肝이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길 가던 方士가 중환자에 대한 妙藥으로 사람의 肝을 권하면, 환자의 효성스런 자손은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清代의 朱彝尊(1629~1709)도 의사가 할고할 것을 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36) 李觀, 『盱江集』 권30, 「進士傳君墓誌」, “兄嘗病苦, 醫須人肉, 爰割其股.”

37) 胡炳文, 『純正蒙求』 卷上, “其醫云, 食人肉則差.”

38) 胡炳文, 『純正蒙求』 卷22, 「曹府君墓誌銘」, “母嘗病, 醫言人肉可療.”

39) 『明史』 卷301, 列女傳, “一方士至其門曰, 人肝可療.”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말하길 허벅지 살을 베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0)</sup>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할고 풍습을 조장하는 매체로는 서적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효자들의 일화를 모은 『二十四孝』라든가, 陶宗儀(1329~1410)가 元末에 기록한 『輟耕錄』, 明初에 解縉 등이 편찬한 『古今列女傳』 등에는 할고의 예시가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 희곡 작가였던 李九齡은 『輟耕錄』을 읽은 뒤, 그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였지만, 의사의 처방과 기도 등 모든 것이 효과가 없을 때, 겨우 13세 밖에 안된 九齡이 울며 근심스럽게 말하길, “내가 일찍이 『輟耕錄』에서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서 부모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나도 마땅히 그것을 본받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칼을 가지고 스스로 배를 가르려고 하였다.<sup>41)</sup>

이렇게 의사의 권유와 효행을 기록한 서적을 통하여 '할고'라는 풍습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할고의 유행에 대하여 유교적 신체관을 견지한 주자학자들은 의문과 비난을 제시하고, 보다 일반적인 효도야말로 禮法 질서에 맞는 행위라고 보았다.

## V. 明清의 割股에 대한 정책적 혼란

민간에서 유행하던 할고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은 禁止와 解禁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거듭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할고행위에 旌表를 내

40) 朱彝尊, 『曝書亭集』 卷4, 「歸安縣儒學教諭馮君墓誌銘」, “父病, 醫言割股可療.”

41) 『湖廣通志』 卷62, 孝子志, “父有疾, 醫禱皆不效, 時九齡年十三, 憂之泣曰, 吾嘗見輟耕錄有割腹剜心以愈親疾者, 吾當效之. 引刀自割.”

려서는 안된다는 禁書を 발포한 왕조는 元朝이었다. 元의 제1대 황제인 世祖는 至元 3년(1266)과 至元 7년(1270)에 할고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놓았다.<sup>42)</sup>이어서 明朝는 洪武 27년(1394)에 할고의 경우 旌表를 내리지 않겠다는 發布를 하였다.

그런데 洪武帝가 처음부터 할고에 대해서 旌表를 금지하였던 것은 아니다.<sup>43)</sup> 洪武27年(1394) 山東의 백성인 江伯兒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들은 뒤, 홍무제는 더 이상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旌表라는 국가의 포상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sup>44)</sup>

27년 9월에 山東의 守臣이 말하길, “日照의 백성인 江伯兒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아들이 거드랑이 살을 베어서 약을 만들어 드렸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岱岳神에게 빌기를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아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였더니, 드디어 병이 쾌차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살아있는 아들을 죽였습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天倫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禮에서 아버지의 服喪을 3년 동안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이 어리석어서, (부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도리를 저버렸으니 서둘러 올바르게 죄로 다스려야만 한다.”고 하고, 드디어 伯兒를 체포하여 곤장 백대를 가하고, 海南에 수자리 살게 하였다. 이어서 명령하여 旌表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논하게 하였다.

禮臣이 의논하여 말하길, “자식이 부모를 모실 때는 평상시 거처에서는 공경함을 다하고, 식사 봉양은 좋아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병환에는 의사와 약과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 간절한 정성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臥水과 割股와 같은 극단적 행위는 옛부터 들은 적이 없다. 하물며 부모에게 자식이 단 한명 밖에 없을 경우에, 만일 割肝하여 생명을 위태롭고, 혹은 臥水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르면,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여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사당의 제사도 끊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불효됨이 크다고 하겠다. (臥水이나 割股와 같은 행위는) 모두 우매한 무리들이 신이

42) 『元典章』 卷33, 行孝.

43) 『明太祖實錄』 권48.

44) 『明史』 권137, 「任亨泰傳」에도 보임.

한 기적을 바라거나, 또는 어리석은 풍습에 현혹되거나, 旌表를 받기를 기대하거나, 마을의 徭役을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割股에서 그치지 않으면 割肝에 이르고, 割肝에서 그치지 않으면 자식을 죽이는 데 이른다. 이러한 행위는 천륜을 거역하고 살인하는 행위이니,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다. 지금부터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臥氷이나 割股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들어도 旌表의 대상에는 넣지 않는다."고 하였다. 왕이 裁可하여 말하길 "옳다"고 하였다. 45)

여기서 흥무제와 禮部는 효심에서 시작한 割股나 臥氷은 결국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비정상적 효심은 한층 더 과격적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부모의 병구완을 위하여 어린 자식의 목숨을 담보잡고, 또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은 天倫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이런 극단적 행위가 유행하게 된 사태에는 배경이 있었다. 즉 국가로부터 효도의 상징인 旌表를 수여받고, 그를 통해 요역을 면제받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하여 旌表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여, 국가가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공존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洪武帝가 내놓은 旌表 禁수는 3대 황제인 永樂帝 때는 解禁으로 바뀌어 할고를 행한 사람에게 旌表를 내렸다. 이후 5대 황제인 宣德帝 때는 어머니의 병을 위하여 할고를 한 딸에게 정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孝經』의 공자 가르침과 洪武帝의 규정에 따라서 허락하지 않았다.

宣德 元年 5월 行在所의 禮部에서 상소하여 아뢰기를, "錦衣衛의 總旗였던 衡

45) 『明史』 권296, 「孝義」, "至二十七年九月, 山東守臣言, 日照民江伯兒, 母疾, 割脇肉以療, 不愈. 禱空嶽神, 母疾瘳, 願殺子以祀. 已果瘳, 竟殺其三歲兒. 帝大怒曰, 父子天倫至重, 禮父服長子三年. 今小民無知, 滅倫害理, 亟宜治罪. 遂逮伯兒, 杖之百, 遣戍海南. 因命議旌表例. 禮臣議曰, 人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有疾則醫藥禱禱, 迫切之情, 人子所得爲也. 至臥氷割股, 上古未聞. 倘父母止有一子, 或割肝而喪生, 或臥氷而致死, 使父母無依, 宗祀永絕, 反爲不孝之大. 皆由愚昧之徒, 尙詭異, 駭愚俗, 希旌表, 規避里徭. 割股不已, 至於割肝, 割肝不已, 至於殺子. 違道傷生, 莫此爲甚. 自今父母有疾, 瘳台罔功, 不得已而臥氷割股, 亦聽其所爲, 不在旌表例. 制曰, 可."

整의 딸이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할 때 割肝하여 먹게 하자 병이 나았으니 마땅히 旌表를 내려야 합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孝에는 마땅한 道理가 있는 법이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이라고 하셨다. 배를 갈라서 肝을 빼어내는 것이 어찌 孝를 행하는 바른 방법이 되겠는가? 만일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에 이르면 그 죄는 더욱더 큰 것이 되며, 하물며 태조황제가 이미 禁을 내리신 것이 있다. 지금 만일 旌表를 내리면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 된다. 이는 참으로 풍속을 크게 해치는 것이 된다. 女子에게 是是非非를 가리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니 罪를 묻지는 않을 따름이다. 상소에 운허할 수 없다.<sup>46)</sup>

이 기록을 통하여 明代에는 사대부 집에서도 割肝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禮部의 담당관은 旌表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황제는 매우 유교적인 입장으로 不許의 답변을 하고 있다. ‘효의 마땅한 도리’란 바로 『효경』의 신체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죽여서 까지 부모를 섬기려 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할 수 없는 우매한 일이라고 단언한다. 개인적인 天倫보다도 사회적인 인륜의 예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효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과 사대부 집안에서 유행하던 할고는 중국에는 왕족에게도 확산되었다. 襄陵王 朱沖炆<sup>47)</sup>(1404 이전~1477)의 서자인 鎮國將軍 朱範之(1429~1506)는 평소 아버지 및 여러 어머니들을 섬김에 효도를 지극하게 하였다. 生母에게 작은 병이 있어도 근심스런 얼굴색으로 밤낮으로 병석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다. 탕약을 반드시 스스로 봉양한 뒤 잠시 자신의 처소로 가곤 하였다. 얼마 안되어 다시 어머니가 中風으로 병석에 눕자 範之는 땅에 머리를 대고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 대신 자신을

46) 俞汝楫, 『禮部志稿』 권65, 「例外不准旌表」, “宣德元年五月, 行在禮部奏錦衣衛總旗衛整女母病篤, 割肝煮液飲之而痊, 宜旌表. 上曰, 爲孝有道, 孔子曰,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剖腹割肝, 此豈是孝. 若致殺身, 其罪尤大. 況太祖皇帝已有禁令. 今若旌表, 使愚人效之, 豈不大壞風俗. 女子無知, 不必加罪. 所奏不允.”

47) 襄陵王 朱沖炆는 韓憲王 朱松(太祖의 20번째 아들, 1380~1407)의 아들이고, 朱範之의 아버지.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다. 허벅지 살을 베어서 즙으로 만들어 어머니에게 드리니 곧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敎授 和琦등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 아뢰니, 황제가 편지를 내려 칭찬하였다.<sup>48)</sup>

己巳(29일) 편지를 韓府 襄陵王 冲焯에게 보내어 말하길, "짐은 孝弟의 성향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 (叔祖의)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叔祖가 허벅지 살을 베어서 약과 함께 드시게 하셨습니다. ……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어렵고, 더욱이 부모의 歡心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도 叔祖가 이렇게 부모의 歡心을 얻음은 참된 효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叔祖의 효도를 본받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천하 국가가 태평하게 잘 다스려 질 것입니다. 叔祖께서 宗室을 빛내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sup>49)</sup>

왕족의 할고에 대하여 왕이 종실을 빛내는 일이라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家國一體의 봉건국가에서 효도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이다. 집안의 부모에게 생명을 건 효도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충성에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대에 들어가서는 3대 황제 順治帝(재위 1643~1661)는 할고 행위에 대한 旌表하사를 금지한다. 順治 9년(1652)에 "할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는데 이르고, 臥水은 경우에 따라서는 凍死하는데 이른다. 백성들이 따라할까 걱정되어서 旌表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sup>50)</sup>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5대 황제인 雍正帝(재위 1722~1735)는 다시 할고에 대한 정표를 허락하고 말았다. 雍正6년(1728) 福建 巡撫가 어머니 병구완을 하

48) 『明實錄』, 英宗實錄, 景泰元年(1449)秋七月.

49) 『明實錄』, 英宗實錄, 景泰二年(1450)春正月, "己巳, 致書韓府襄陵王冲焯曰, 朕惟孝弟之性, 本乎天賦 …… 母邁危疾, 叔祖割股和湯以進. …… 夫爲人子之道, 奉親固難, 而能得其歡心尤難, 能得父母歡心, 非誠孝不能也. 使天下之人, 皆能如叔祖孝事其親, 國家天下不患其不平且治也. 叔祖可謂有光于宗室의.

50) 『欽定大清會典事例』 권403, 「旌表節孝」

려고 割股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효자에게 旌表를 내려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관할기관인 禮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割股에 대한 旌表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옹정제는 예외로 해서 旌表를 내리게 하였다. 이런 문제는 禁書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옹정제가 내린 「上諭」은 다음과 같다.

上諭, 福建의 巡撫가 상소를 올려서 말하길, “羅源의 효자 李盛山이 割肝하여 그의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나았지만 뒤에 李盛山은 상처로 인해 몸에 위중한 훼손이 생기게 되었으니 旌表를 내려줄 것을 청합니다”고 하였다. 禮部에서는 의논하길 “割肝은 곧 백성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효도이다.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旌表의 예가 없으므로, 이번에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데 割肝하여 병을 고치는 일은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를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은 진실로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깊이 가련하고 불쌍할 따름이니,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旌表를 내리려한다.

내가 일찍이 韓愈의 글을 읽으니, “어머니의 병에 다만 약재를 달이거나 분말로 만든 약을 복용하게 할 뿐이지 아직 肢體를 훼손하여 봉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만일 그것이 올바른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성현이 마땅히 대중보다 앞서서 행하였을 것이다.”고 하였다. 또 朱子の 책을 읽으니, “割股는 본래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만일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또한 행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 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명예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先儒 중에는 이런 행위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었다. 本朝의 順治 년간에도 이런 예를 규정함에 있어서, “할고는 경우에 따라서 생명을 잃는데 이르고, 臥水는 경우에 따라서 凍死하는데 이른다. 백성들이 따라할까 걱정되어서 旌表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요즘 지방관들은 아직 일찍이 성현의 바른 삶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도하질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愚夫愚婦가 부모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훼손하여 약으로 올리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왕왕 생겼다. 하지만 이미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만일 旌表조차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괴로운 마음을 표창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로할 방법

이 없게 된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旌表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에 상소문을 들고 예외로 은혜를 내리려고 한다.<sup>51)</sup>

옹정제가 旌表에 대해 解禁하는 이유로 지방관들이 백성을 제대로 교화하고 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지방에 까지 청조의 정치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진정어린 효심을 들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조차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국가가 알아주고 있다는 표식으로 특별히 정표를 하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령을 파기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明清 시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령을 내리기도 하고 파기하기도 하는 혼란상을 보여주었다.

## Ⅵ. 나오며

'割股'는 자식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베어서 부모의 병구완을 하는 행위이다. 부모의 병환이 위독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처방이 없을 때, 효심어린 인간이 상상한 것은 극단적으로 '人肉'을 베어 탕으로 만들어 드시게 하는 것이었다. 효도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51) 雍正帝「上諭」(雍正6年 3月 2日奉) 上諭, “覽福建巡撫羅常賚奏稱羅源孝子李盛山割肝救其母病, 母病愈, 後李盛山傷重身, 故請加旌表. 部議以割肝乃小民輕生愚孝, 向無旌表之例, 應不准行. 朕念割肝療疾事, 雖不經, 而其迫切救母之心, 實屬難得, 深可憐憫, 已加恩准其旌表矣. 嘗讀韓愈之文曰, 母疾則止於烹粉藥石以爲事. 未聞毀傷肢體以爲養. 苟不傷於義, 則聖賢當先重而爲之矣. 又讀朱子書曰, 割股固自不是, 若誠心爲之不求人知亦庶幾. 今乃有以此要譽者. 是先儒論此者屢矣. 本朝順治年間定例割股或致傷生, 臥冰或致凍死, 恐民倣效, 不准旌表. ……但向來地方有司未嘗以聖賢經常之道與國家愛養之心, 明白曉諭開導編氓. 是以愚夫愚婦救親而捐軀, 殉夫而殞命者, 往往有之. 既有其事, 若不予以旌表, 恐無以彰其苦志, 而慰其幽魂. 所以數十年來, 雖定不予旌表之例, 而仍許其奏聞, 且有邀恩於常格之外者.”

‘人肉’의 공양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행위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부모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기 때문이다.

‘할고’의 행위는 唐代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처음에는 불치병에 대한 의약적 권장이었던 듯하다. 부모의 병이 회복되지 않아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인육’을 드리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식 된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할고 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旌表를 하사하여 권장하자, 정표를 받기 위한 할고도 행하여질 정도였다.

중국에서는 割股 외에도 극단적 행위로 ‘割肝’도 있다. 肝을 베어내는 것은 허벅지 살을 베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생명유지에 위협하다. 이런 극단적 행위는 송대의 주자학자들에게는 권장할 수 불합리의 극치였을 것이다. 송대에는 유학적 가치관이 보편화 되면서 『孝經』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란 신체관에 입각하여 ‘人肉’의 처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더욱이 ‘修己治人’을 모토로 삼고 있는 정치관에서 남에게 효심을 보여주기 위한 ‘爲人’의 割股는 표창 받을 수 없는 행위로 견제되었다. 따라서 유학적 신체관이 보편화된 송대에서는 할고 금지와 함께 旌表를 금지하는 ‘禁습’이 발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과 士人層에서는 남송에서 元代로 접어들면서도 할고는 여전히 유행하였고, 심지어 왕족에게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후 明代와 清代에서는 할고에 대하여 정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禁습이 발포 되었다가 다시 해제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만주족의 淸朝는 초기에는 禁습을 지키다가, 중기에는 旌表를 교화와 계도의 방법으로 적극 사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황제의 통치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人肉’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인육을 제물로 바치는 상징이 기록에 남아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인의 할고에 내포된 종교적 의미가 근세의 유교적 신체관을 거치면서 할고를 금지하는 禁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모 자식의 개인적 天倫보다, 가족 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人倫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江南通志』  
『古今圖書集成』  
『舊唐書』  
『舊五代史』  
『大學或問』  
『明史』  
『明太祖實錄』  
『未軒文集補遺』  
『范太史集』  
『西山文集』  
『宋史』  
『純正蒙求』  
『新唐書』  
『新編二十四孝』，光明日報出版社，北京，1995。  
『盱江集』  
『元典章』  
『二十四孝』，中國書店 出版，北京，1999。  
『全唐文』  
『朱子語類』  
『冊府元龜』  
『天馬山房遺稿』  
『曝書亭集』  
『湖廣通志』  
『孝經』  
『孝經』  
『孝行錄』(庚子本)奎章閣所藏。  
『孝行錄』(己巳本)，奎章閣所藏。  
『欽定大清會典事例』

- 邱仲麟, 「不孝之孝 - 唐以來割股療親現象的社會史初探」, 『新史學』 6卷1期, 1995.
- 邱仲麟, 「人藥與血氣 - “割股”療親現象的醫療觀念」, 『新史學』 10卷4期, 1999.
- 권 보, 『孝行錄』, 경인문화사, 2004.
- 金文京, 『孝行錄』と「二十四孝」再論, 『藝文研究』 65号, 1994.
- 羅瑩黃黎星, 『孝經開講』,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 潘榮華楊芳, 「論宋代旌表政策對民間「割股」陋俗的景向」,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13卷3期, 2012.
- 桑原隲藏, 「支那人の食人肉風習」, 『桑原隲藏 全集』第1卷, 岩波書店, 1968.
- 桑原隲藏, 『中國의 孝道』, 講談社, 1977.
-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 吳佩林鐘莉, 「傳統中國「割股養親」語境中的觀念與信仰」, 『史學理論研究』 제4기, 2013.
- 汪受寬, 『孝經, 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16.
- 姚中秋, 『孝經大義』, 中國文聯出版社, 2017.
- 윤호진, 『孝行錄』과 孝行說話, 『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2002.
- 이민수, 『효경』, 을유문화사, 1971.
- 前川亨, 「身體感覺としての孝」, 『東アジア社會における儒教の變容』, 專修大學出版局, 2007.
- 鄭曉來, 『中國古代的食人 - 人食人行爲透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周海嬰, 『魯迅與我七十年』, 南海出版公司, 2001.
- 陳壁生, 『孝經學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5.
- 皮錫瑞巽/吳仰湘点校, 『孝經鄭注疏』, 中華書局, 201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 Abstract

### *On the Change of Social Acceptance of the 'Halgo' Act of Modern China*

Han Yae-w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of Gangneung Hyanggyo and Its Role in the Community from 1894 to 1945.

In 1894, following the a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in Hyanggyo was virtually suspended. However, Hyanggyo continued to serve as an exchange space for local Confucian scholars while maintaining the ritual function. In particular, Gangneung Hyanggyo maintained its reputation as an educational and academic institution by holding lectures, exams and other events.

I particularly noted the process of setting up a Hwasan school in 1908. I have rediscovered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rack record of Jeong Hyeon-dong, who led the school's establishment. Hwasan school offered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and in this regard that were different from Western modern schools. For this reason, people who pursued Western studies and founded modern schools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Hwasan school.

**【Key words】** Gangwod-do, Gangneung Hyeokgyo, Hwasan School, Jung Hyun-dong, Cho Ik-hwan, Record of Hwasan School

투고일 : 5월 19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 Professor, Chosun University / yaewonh@chosun.ac.kr